

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·녹화·촬영·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

의안 번호	26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7. 19.

발 의 자 : 조승남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속초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등의 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,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,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)
- 나. 본회의의 녹음등은 매회기 초에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. (안 제3조)
- 다. 의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하도록 함. (안 제4조)

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·녹화 촬영·중계방송등허가에 관한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속초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등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안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(이하 '녹음등'이라 한다)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
2.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
3.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
제 3 조 (허가절차) ①본회의의 회의장안(방청석에 한한다)에서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본회의의 녹음등은 매회기 초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허가의 취소) ①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속초시의회 회의상황 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 허가신청서

속초시의회 의장 귀하

다음과 같이 본회의 상황을 녹음(녹화·촬영·중계방송)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기 간

199 년 월 일부터 (일간)
199 년 월 일까지

2. 신 청 인

소 속(또는 주소) :

성 명 :

3. 목 적 :

4. 방 법 :

5. 소지기구 :

199 년 월 일

신청자(발행인 또는 편집인)

(인)